

이의신청 기본원칙

□ 이의신청 기본원칙

1) 요양기관 제출자료로 산출하는 지표

: 평가자료 제출기간 또는 정정신청 기간에 유효하게 제출된 자료로
기준 충족이 확인되나, 착오로 불인정된 경우 이의신청 가능

※ 평가자료 제출기간 또는 정정신청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이의
신청 기간에 새롭게 제출한 경우 유효한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음

2) 요양기관의 별도 자료제출이 불필요한 지표*

: 산출지표 값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

* 진료실적, 신고현황, 타 평가 자료 등을 활용하는 지표 등

3) 평가방법, 세부기준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은 이의신청으로 보지 않고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제도 일반에 대한 의견 제시로 봄